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6-100호

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

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1. 4.

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

1. 건 명 : 직업안정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에 따른 공시송달
2. 근 거 : 직업안정법 제2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번	사업소	사업자등록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사유	처분내용		
1	주식회사 비에스제이	197-88-*****	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직업정보제공사업 대표자 변경 미신고	경고	폐문부재 등	광진구 광나루로436 의정부시 범골로63번길

4. 공고기간 : 2026. 11. 4. ~ 2026. 11 18.(14일간)
5. 과태료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(11층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고용관리과 김용희(Tel 02-2142-848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